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5. 13 선고 2020가단362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---

### 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3. 1. 18 선고 2021나50772 판결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5. 13 선고 2020가단362 판결

### 전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정인

담당변호사 심혜민, 임경섭

변 론 종 결 2021. 3. 11.

판 결 선 고 2021. 5. 13.

### 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 B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한 2017. 6. 25.자 증여계약을 151,94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B는 원고에게 151,94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6. 7. 3.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C의 형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2002. 3. 27. 2002. 3. 26.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가 마쳐졌으며, 2006. 12. 6.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각 마쳐졌다.

나.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의 다, 라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2. 11. 6. 교환을 원인으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의 마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2. 1. 5. 같은 달 3일 매매를 원인으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라.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3. 7. 31.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.

마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3. 22. 2017. 1. 30. 매매를 원인으로 C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바.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H 주식회사(이하 ‘H’이라 한다)는 C, I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. 2. 15.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‘C, I은 연대하여 H에게 151,94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2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(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5482호), 위 판결은 2007. 3. 20.

확정되었다.

사. H은 주식회사 J(이하 'J'이라 한다)에 위 판결에 기한 채권(이하 '이 사건 채권'이라 한다)을 양도하였고, J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'C이 K 주식회사에 투자한 투자금반환채권 및 위 회사로부터 매달 지급받는 급료(본봉 및 제수당), 기말 상여금, 기타 명목의 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/2'에 대하여 2012. 12. 12.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(울산지방법원 2012타채12020호), 위 결정은 2012. 12. 17. K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.

아. J은 원고 및 G에게 이 사건 채권의 각 1/2을 양도하였고,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와 G은 2015. 2. 4.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로부터 H의 승계인 자격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.

자. G은 2019. 6. 14.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/2에 관한 K 주식회사에 대한 추심금 채권을 양도하고, 그 무렵 K 주식회사에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6, 17, 3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판단

### 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부동산은 C이 D, F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데, C이 2017년경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. 이는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담보채권 151,94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 나. 판단

살피건대,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D, F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및 C이 2017년경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에 관하여,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, 26, 27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1, 2호증, 갑 제11, 2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, 갑 제2 내지 4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

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오윤경

#### 가처분 부동산의 표시

1.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가. | <input type="text"/> | 대지 528㎡ |
| 나. | <input type="text"/> | 대지 523㎡ |
| 다. | <input type="text"/> | 대지 90㎡  |
| 라. | <input type="text"/> | 임야 174㎡ |
| 마. | <input type="text"/> | 담 10㎡   |

2.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기장군

구조 : 가. 일반 철골구조  
나. 철근콘크리트 구조  
다. 철골조지붕

면적 : 가. 지상1층 ,지하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 생활시설  
나. 1층 366㎡(일반음식점)  
다. 지 1층 182.25㎡(소매점)  
라. 지 1층 116.13㎡(주차장)

이 상

